

『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폐지이유

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「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